

의안번호	2218618
의 퇴 인	김성원의원
회 답 일	2026. 5. 13.
추계번호	26B234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순환경제규제특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4,800만원(연평균 96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순환경제규제특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30조의5)	9.6	9.6	9.6	9.6	9.6	48	9.6

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위원회의 위원 수, 회의 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0조의5(순환경제규제특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신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순환경제규제특구위원회(이하 “순환경제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1. 순환경제규제특구지역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순환경제규제특구지역의 지정·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순환경제규제특구지역 계획에 관한 사항 4. 규제특례의 적용·변경·취소에 관한 사항 5. 규제특례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순환경제규제특구지역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순환경제규제특구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량규정
		순환경제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0조의5(순환경제규제 특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순환경제규제특구위원회의 설치(안 제30조의5)

- 개정안은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지정·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순환경제규제특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본 추계에서는 순환경제규제특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른 비용을 추계하기 위하여, 유사사례인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¹⁾의 위원 수 및 회의 개최 횟수 등을 준용함

1) 제27조(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제33조에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20명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1.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심의 대상이 되는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심의 대상이 되는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원 수)** 개정안에 따른 위원회는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학계, 전문가, 산업계 등 총 1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함
- **(회의개최 횟수)** 회의 개최 횟수는 유사사례인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개최 예정 횟수(2026년 기준 분기당 1회 개최)를 준용하여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1]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와 순환경제규제특구위원회 심의사항 비교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현행 법 제8조)	순환경제규제특구위원회(안 제30조의5)
·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여부, 구역·기간·규모 등에 관한 사항	·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지정·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계획에 관한 사항 · 규제특례의 적용·변경·취소에 관한 사항
·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연장·취소에 관한 사항	· 규제특례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정비 필요 여부, 검토 결과 등 제도 관련 사항	·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회의참석 사례금)** 안전 검토비 등을 포함한 회의참석 사례금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20만원(참석수당 20만원²⁾)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순환경제규제특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4,800만원(연평균 960만원)으로 추계됨

2)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20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100,000원내에서 집행(기획예산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6. 1. p.150.)

[표 3] 순환경제규제특구위원회 구성에 따른 비용추계: 2027~2031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민간위원 수(A, 명)	12	12	12	12	12	—	—
회의개최 횟수(B, 회)	4	4	4	4	4	—	—
회의참석 사례금(C, 만원/명·회)	20	20	20	20	20	—	—
추가재정소요(D=A×B×C, 백만원)	9.6	9.6	9.6	9.6	9.6	48	9.6

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위원회의 위원 수, 회의 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위원회의 위원 수, 회의 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nabo.go.kr

[참고자료]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설명자료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개 요

- (근거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7조(‘24.1.1. 시행)
- (구성) 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위원(20명)
 - － (당연직 8) 관계부처(재경부, 과기부, 중기부, 국토부, 산업부, 농림부, 복지부, 해수부) 차관
 - － (위촉직 12)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 협·단체, 산업계 등 전문지식을 보유한 위원
- (임기) 2년(1회 연임 가능)

□ 심의·의결 사항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內 규제특례(제30조), 임시허가(제33조)
 - － (규제특례) 여부, 구역·기간·규모, 부가조건, 유효기간
 - － (임시허가) 여부, 유효기간
- 제도 관련 보고 사항
 - － 규제 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정비 필요 여부, 검토 결과 등
 - － 규제개혁위원회에 기후부 장관이 규제 정비 요청을 한 사실 및 처리 결과
 - －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연장·취소 사항

□ 개최 실적

- 2024년 2회, 2025년 3회, 2026년 2회(4월 말 기준)
 - － 2024년 9건, 2025년 26건, 2026년 3건 승인